면지

인 사 말

새정치민주연합 신용 및 개인정보대량유출대책 특위 연속토론회 제2탄
금융계의 정보 집중과 소비자 피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계속되는 개인정보유출, 근본대책은 확실한 피해자 보상제도 마련"

안녕하세요. 강기정입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김기식, 이학영 의원님, 그리고 발제를 맡아 주신 이은우, 장진영 변호사님을 비롯한 토론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신용 및 개인정보대량유출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준비한 연속토론회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화요일에 열렸던 1차 토론회가 주민번호체제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의 근본적인 대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면, 오늘 토론회는 「금융계의 정보 집중과 소비자 피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금융권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유통에 대한 문제점과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해 전문가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신용및개인정보대량유출대책특위를 통해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를 위해서, 피해자 구제제도 도입, 2차피해 예방, 개인정보전담기구 설립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누차에 걸쳐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법으로도 개인정보유출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면서, 관리 · 감독을 강화하는 수준의 대책만 발표하였을 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였고, 2월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1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이후, 경찰에서 2개월간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1억 1,680만 건의 개인정보를 회수한 것만 보더라도, 이런 수준의 정부 대책으로

는 개인정보유출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도 책임자 몇 명 처벌되고, 얼마 되지도 않는 과징금만 내면 되는 현행제도로는 개인정보유출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소비자 배상명령제도나 집단소송제도와 같이, 저희 특위에서 주장하는 피해자 구제제도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다 확실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에서야 비로소,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가해주신 각계 전문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서, 이번 4월 국회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예방과 피해자 보상을 위한 진일보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4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신용 및 개인정보대량유출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 기 정

Contents

새정치민주연합 신용 및 개인정보대량유출대책 특위 연속토론회 제2탄
금융계의 정보 집중과 소비자 피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인사말**
- **강 기 정** 새정치민주연합 신용 및 개인정보대량유출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 회**
- **이 헌 욱**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주제 1 **금융계의 과도한 정보 수집·집중·공유 문제**
– 과도한 정보 수집과 신용정보사/신용정보집중기관의 문제점

▸ **발 제**
- **이 은 우** 변호사(개인정보보호위원, 법무법인 지향) ····· 1

▸ **토 론**
- **최 용 호** 과장(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최 지 현**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주제 2 **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배상명령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

▸ **발 제**
- **장 진 영** 변호사(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법무법인 강호) ····· 39

▸ **토 론**
- **박 진 식** 변호사(법무법인 넥스트로)
- **조 남 희** 대표(금융소비자원)

발 제 I

금융계의 정보 집중과 소비자 피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신용정보 집중의 문제와 신용정보보호법의 개정방안

이 은 우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 법무법인 지향

신용정보 집중의 문제와 신용정보보호법의 개정방안

이은우(법무법인 지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높은 본인식별과 낮은 익명성

- 실명서비스 위주
  - 인터넷 실명제의 여파
  - 위헌 결정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정책
  - 익명서비스 권리 확립되어 있지 못함
- 주민등록번호

재식별 가능

- 핵심 식별자 역할을 하는 실명 식별된 식별자가 많음 -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트위터, 카카오톡
- 대부분 실명가입 강제하고, IP, 휴대폰 고유식별번호, MAC Address 등 식별가능한 정보 수집 보편화
- 익명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식별 가능. (익명화 조치를 했을 때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취급하기 어려움).

정보의 집중도 높음

- 높은 신용카드 보급률
- 대기업
- 높은 IT 보급률
- 통신 가입비율(LTE)
- 포털
- 제휴 서비스
- 금융지주

우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그 동안 집적된 개인정보

- 신용정보
  - 신용정보집중기관
- 금융지주정보
  - 금융거래, 보험, 주식 등
  - 신용카드 거래내역
- 포털
  - 온라인에서의 모든 활동 내역
- 통신사
  - 통화내역
  - 본인확인 내역
  - 애플리케이션 활용
  - 위치정보

그 동안 유출된 개인정보

-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 금융거래정보
  - 은행, 카드, 대출, 보험
- 신용카드 정보
  - 신용카드 거래금액, 연체 내역
- 포털 사이트
  - 아이디, 패스워드, 가입 현황
- 전화번호, 이름, 요금제, 이메일 주소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높은 IT 보급률로 데이터 방대함

- 초고속 인터넷 보급으로 인터넷 이용 활성화
-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로 방대한 데이터 집적 가능
- IPTV 655만, 종합유선방송 517만, 위성방송 379만, 총 1,551만

대규모 기업집단

- 대규모 기업집단 경제 집중 심화 및 기업집단 내외 제휴 활성화
- 대규모 기업집단의 개인정보 보유
- 신용카드(세계 1위), 유통, 통신, 통신, 스마트 기기 등

상호출자제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현황

년 도	2003	2006	2009	2012	2013
기업집단 수	49	59	48	63	62
소속회사 수	841	1,117	1,137	1,831	1,768
자산총액	652	873.5	1,310.60	1,997.60	2,108.10

순위	기업집단명	계열사수	자산총액
1	삼성	76	306.1
2	현대자동차	57	166.7
3	에스케이	81	140.6
4	엘지	61	102.4
5	롯데	77	87.5
6	포스코	52	81.1
7	현대중공업	26	56.5
8	지에스	79	55.2
9	한진	45	38.0
10	한화	49	35.9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방대한 공공부문 보유정보

•주민등록 정보, 부동산 등기 정보, 건강보험 관련 의료정보 등.

금융지주회사, 계열사, 제휴사 정보공유. 높은 신용정보 활용율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는 금융거래 정보, 카드 사용내역 정보, 개인의 신용에 대한 정보 등이 모두 포함된다.

•금융지주회사 사이에 이런 정보들이 공유됨.

금융지주회사 현황

우리	신한	KB	하나	농협	산은	SC	씨티	BS	DGB	한국투자	메리츠
자회사 등 구성	자회사12 손자회사 64	자회사 13개손자 회사18개	자회사10 손자회사 10	자회사10 손자회사 22	자회사7 손자회사 8	자회사5 손자회사 36	자회사5 손자회사 0	자회사3 손자회사 1	자회사6	자회사5 손자회사 0	자회사7 손자회사 14

한국에서 '나'에 대한 정보의 생성, 저장, 활용

인터넷 / 모바일	통신	금융, 신용	유통	TV
• 포털 : 네이버, 다음, 구글 • SNS : 트위터, 카카오톡, 페이스북, 라인, 틱톡, 밴드 등 • 모바일 앱	• 이동통신(2013년 6월말 가입자수 5,410만명) • 스마트 폰 가입자 수(2013년 6월말 가입자수 3,556만명, LTE 가입자 2200만명)	•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사 - 금융지주회사간 정보 공유 • 카드 거래 내역, 금융거래 내역, 신용관련 정보	• 대형 유통사(온라인, 오프라인, TV)	• 케이블, 위성, DMB, IPTV(752만)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 이대로 방치할 경우 무너진 신뢰가 회복될까?
- 개인정보 포식을 방치할 경우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

이것만이라도 반드시 고쳐야

신용정보보호법 개정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	빅데이터 활용시도에 대한 대응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 타워 – 개인정보 감독기구
• 신용정보 주체의 권한 강화 • 신용정보 집중체계의 개선 • 신용정보 감독체계의 개선	•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변경 • 주민등록번호의 활용 범위 개선 • 목적별 식별번호 활용하도록 함	• 개인정보 거대 포식자의 빅데이터 활용 규제 •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 감독의 강화 : 실태조사, 시정조치 필요	•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인한 문제 해결 • 강력하고, 실효성이 있는 감독기구 필요 • 시정조치권, 행정입법권, 독립성이 있는 기구 필요

금융, 신용 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정비

신용 정보 규율과 감독기구의 분열 극복

관련 법제 분열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에 대한 규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에 대한 규율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금융거래내역
- 금융지주회사법 등

감독기구 분열

- 금융위원회
  - 금융 부문, 신용정보 부문
  -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권리구제, 고시 제정
- 방송통신위원회
  - 정보통신서비스(인터넷, 모바일)와 관련된 부분
- 안전행정부
  - 기타 부문, 신용정보법 적용대상이 아닌 부문
- 지방자치단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공부문 시정권고, 제도 개선 분야

분열로 인한 문제점

권한 분산으로 통일적 대응 어려움

- 신용정보의 유출로 스미싱, 피싱, 파밍 등 발생할 경우, 신용정보를 유출하는 스파이웨어 배포되고 있는 경우
- 현재,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분리로 신속한 협력이 어려움

통일적 대응 필요

- 개인정보보호는 통합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이며, 감독적, 규제적 분야임
-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기구에서 담당하는 것은 부적절함
-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진흥업무가 주된 업무임

외국의 신용정보 감독 체계

대부분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에서 감독

- 대부분의 국가
  - 유럽연합의 대부분의 국가들
    - 오스트리아(Austrian Data Protection Commission), 체코(Data Protection Office), 덴마크(Data Inspection), 독일(Federal Data Protection Authority), 핀란드(Data Protection Ombudsman), 그리스(Data Protection Authority), 헝가리(의회), 아이슬란드(Data Protection Authority), 이탈리아(Data Protection Authority), 아일랜드, 네덜란드(Dutch Data Protection Authority), 노르웨이(Data Protection Authority), 루마니아(Data Protection Authority),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스웨덴(Data Protection Authority), 스페인(Data Protection Authority), 영국(Data Protection Authority, ICO), 프랑스((Data Protection Authority, CNIL) 등.
  -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도 개인정보 감독기구에서 담당.
  - 중남미의 국가들도 개인정보 감독기구에서 담당.
  - 홍콩도 Privacy Commissioner's Office
  - 미국은 FTC에서 담당(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보호, 공정거래 담당)
- 소수 국가만 금융 당국 또는 중앙은행이 감독
  - 폴란드(경제부처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동), 러시아(금융위원회), 세르비아(중앙은행), 벨기에 등만 예외.

외국의 신용정보에 대한 법제

개인정보보호법에 통합적용

- 오스트리아,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 관련 법

- 벨기에, 체코,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러시아 등
- 은행법에 관련 규정을 두거나, 신용정보법 등을 별도로 제정함.
- 법적 구속력이 있는 code of practice를 제정하는 경우도 있음.
- 별도의 법을 두는 경우에도 감독기능은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에서 수행함

신용정보법의 체계

통합형과 분리형	장단점	선택

• 통합형 국가
  • 개인정보보호법에 신용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규정을 함께 넣는 법제
  • 오스트리아, 독일, 뉴질랜드 등
• 분리형 국가
  •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에 관한 법률을 별개로 둠
  • 벨기에, 체코, 핀란드, 그리스 등
	• 장점
	  • 일관성, 개인정보보호의 원칙과의 조화
	  • 개인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알 수 있음
	• 단점
	  • 법률의 규모가 커지는 점
		• 통합형을 따를 수도 있고, 분리형을 따를 수도 있을 것임.
		• 통합형으로 할 경우, 채권추심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법으로 두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신용정보법률의 명칭과 목적 변경

현재	개선(분리형으로 할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분리형으로 할 경우 •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 • 이 법은 개인신용정보 주체의 신용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운용 및 신용정보의 적정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 '신용질서의 확립'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함. •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육성, 효율적 이용, 체계적 관리가 우선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감독기구 개선방안 – 통일과 통합

감독주체의 통일과 통합

- 현재의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의 전문성이 떨어짐. 기술의 변화 발전에 신속 대응 필요.
- 외국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 감독기구에서 전담.
- 제언
  -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 감독 업무 담당부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시켜서 통일적 감독 업무 수행하도록
  -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부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시켜서 통일적 감독 업무 수행하도록 함

신용정보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원칙의 적용 강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의 기본 원칙의 적용강화

방법	목적 명확화	필요성	정확성	안전성
• 신용정보법에 다시 명시하는 방안, •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규정을 두는 방안, • 당연히 해석상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 • 세가지 방안 모두 의미가 있음. • 주의적 의미에서 두 번째 방안도 고려해볼 만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의 기본 원칙의 적용강화

개인정보주체 권리 보장	사생활 침해 최소화	익명성	신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용정보 수집시 자기결정권 보장 강화 필요

신용정보의 수집과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개선방안

• 개인정보보호법 : 동의의 원칙 명시
• 신용정보법의 문제점
  •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 규정이 없음.
  • 신용정보의 타인 제공에 대해서 동의 규정(32조 1항).
  • 신용정보 수집, 조사 및 처리의 제한 규정이 있음(16조 1항).
	•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의 원칙을 명시해야 함.
	• 그 후, 동의가 필요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규정을 두어야 함.

신용정보법과 동의

신용정보법 제32조

-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개인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2.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5-9 생략
- ⑤ 제4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5.19>
- ⑥ 제4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⑦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⑧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신용정보 수집시 자기결정권 보장 강화 필요

신용정보 수집시 원칙	개선방안

• 개인정보보호법
  • 최소수집의 원칙, 목적 적합성의 원칙, 필수정보와 선택정보의 구분, 필수정보 제공시 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
• 신용정보법의 문제점
  • 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 신용정보법에도 신용정보 수집과 관련한 원칙 규정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이 적용됨을 천명
	  • 최소수집의 원칙, 목적 적합성의 원칙, 필수정보와 선택정보의 구분, 필수정보 제공시 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
	  • 처벌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신용정보 최소수집의 원칙의 문제

신용정보법의 최소수집의 원칙	개선방안
•신용정보법에는 최소수집의 원칙에 대한 명시적 규정과 처벌 규정이 없고, 오히려 '필요한 범위'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음. •**제15조(수집·조사의 원칙)**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조사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조사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법과 정통망법에는 명시적 규정이 있음(위반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 신용정보법 제15조를 삭제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수준에 맞게 개정하여야 함. •표준동의서 개정 •그 동안 금융당국의 효과적인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효과적 감독이 필요함.

금융감독원 표준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표준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_____ 기관 귀하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필수적인 제공에 관한 사항

(1)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신용조회회사
□ 개인(신용)정보 이용목적
(예)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신용도 평가, 실명확인 등 신용조회회사의 업무
□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예)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국적, 연락처 등)
신용거래정보(본 거래 이전 및 이후의 실적을 포함한 거래내용)
신용능력정보(재산·채무·소득의 총액·납세실적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예) 신용정보집중관리·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및 신용도 평가, 실명확인 등 신용조회업무 목적 달성시까지

(2) 거래목적 달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예) 신용정보 제공·이용기관, 거래목적 달성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공동사업자
□ 개인(신용)정보 이용목적
(예) 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 여부 판단, 금융사고 조사,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예)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국적, 연락처 등)
신용거래정보(본 거래 이전 및 이후의 실적을 포함한 거래내용)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예) 제공 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1), (2)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거래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인 제공에 관한 사항(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_____
□ 개인(신용)정보 이용목적
(예) 상품 및 서비스 소개, 회원유치, 서비스이용 권유 등
□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 _____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예)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인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경의 제공(사은품·할인쿠폰 제공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표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_____ 기관 귀하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필수적인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 여부 판단, 금융사고 조사,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_____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예)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인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 고객에 대한 편의 제공, 상품 안내 등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_____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예)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인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편의 제공(사은품·할인쿠폰 제공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목적의 명확화와 목적달성 후 폐기

신용정보 수집, 조회 등의 경우 목적 명확화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목적 달성한 경우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목적 외 전용을 막을 수 있음.
- 목적이 명확해야 목적 달성 후 폐기 가능.
- 현재 대부분의 신용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에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음.
- 각 정보별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목적 달성시에는 폐기하도록 하여야 함.
- 해당 규정을 신용정보법에 별도로 두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임.

개인신용정보 이용, 제공 등의 동의 철회

현재의 신용정보법	개선
•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만 철회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함. • 현재 신용정보법 시행령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를 설정하면서 동의를 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나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현재 신용정보법 시행령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모든 동의 철회권 보장 • 동의 철회 보장하고, 철회 제한되는 경우 규정 • 철회 요청시 즉시 조치하도록 규정

개인신용정보 이용, 제공 등의 동의 철회 현행 규정

신용정보법

-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외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용역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③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의 내용, 행사방법 등을 거래 상대방인 개인에게 고지하고, 거래 상대방이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를 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때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고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추가적인 사후 고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④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 ⑤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에 따라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신용정보 이용, 제공 등의 동의 철회 현행 규정

신용정보법 시행령

- 제32조(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동의 철회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를 설정하면서 동의를 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나야 철회할 수 있다.
-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연락중지 청구의 대상 및 내용을 특정하여 제1항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④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거래 상대방인 개인에게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 내용을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추가 고지하여야 한다.
- ⑤ 법 제3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수신자 부담 전화, 수취인 부담 우편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정지와 삭제 청구제도 도입

현재의 신용정보법	개선

• 개인신용정보 처리 정지와 삭제
  • 현재 신용정보법에는 개인정보법에 보장되고 있는 개인신용정의 삭제 청구와 처리정지 청구에 대한 규정이 없음.
• 대리인에 의한 권리행사 허용
  • 현재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주체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
	• 신용정보법에도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청구와 처리정지 청구 규정을 도입할 필요 있음(단, 개인정보법처럼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규정)
	• 신용정보법에도 개인정보법에 있는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를 대리인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정보업 개선

우리나라의 신용정보 체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 전국은행연합회
  • 해외의 경우 대부분 중앙은행이 담당함
  • 우리의 경우 은행업자들의 협회가 담당
  • 운영과정에서 신용공여자에 치우칠 우려가 있음.
	• 보험, 여신전문금융업, 금융투자업, 정보통신사업자협회 등 업종별 협회가 담당.
	  • 공공성보다는 해당 업체들의 이익에 치우칠 우려가 있음.
		• 신용조회업 (Credit Burea)
		• 신용조사업
		• 채권추심업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보관함으로써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회사등 상호 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이하 "집중관리·활용"이라 한다)하려는 자.

신용정보의 흐름 (신용정보집중, 신용조회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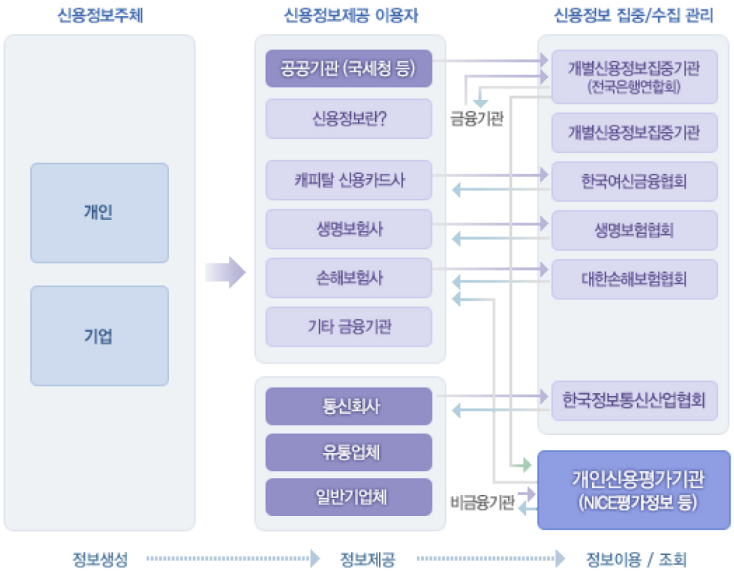

출처 : NICE 평가정보

우리나라의 신용정보 집중 수준

공적 신용정보 집중기관 정보비율(성인 대비)(2013. 세계은행)

- 한국 – 100%로 세계 1위(50% 이상 15개국) 정보의 내용도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수준(6점 만점에 6점)
- 신용카드 이용건수(2009-2012 4년간 세계1위)

1980-1983 | 1984-1988 | 1989-1993 | 1994-1998 | 1999-2003 | 2004-2008 | **2009-2013**

Country name	2009	2010	2011	2012	2013
Portugal	81.3	67.1	86.2	96.0	100.0
Korea, Rep.	100.0	100.0	100.0	100.0	100.0
Belgium	56.5	57.2	72.6	89.0	96.2
Uruguay	17.8	19.4	28.6	32.9	80.2
Latvia	46.5	57.2	59.7	63.8	73.6
Mauritius	36.8	49.8	49.8	56.3	69.2
Bulgaria	34.8	37.0	52.8	56.3	61.0
Belarus	23.4	33.5	49.5	56.2	60.3
Dominican Republic	29.7	28.5	35.9	44.1	59.7
Mongolia	22.2	19.2	51.4	58.9	58.3
Brunei Darussalam	0.0	0.0	0.0	0.0	55.7

신용정보 활용 범위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필요

신용정보 활용의 범위 검토 필요

반성적 검토	현행제도	사회적 합의 필요

• 우리의 신용정보 활용에 대해 반성적 검토가 필요
• 과다한 신용정보의 공유, 활용은 부정적 효과 발생
• 과도한 마케팅 활용, 경제활동 편입 방해 등의 문제를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논의하여 사회적 합의 필요
	• 신용조회업자를 통한 신용정보 활용의 범위
	  • 상거래의 설정, 유지 여부의 판단 목적
	  • 고용의 경우도 제한이 없음
	  • 기타 동의하는 목적으로 활용 가능
	• 신용정보 수집의 범위
		• 해외 입법 검토
		• 현재의 이용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점검 필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문제점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정보수집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신용정보 수집

• 수집정보
  • 동의 불요 정보 :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할 수 있음. (신용도 평가정보와 공공정보)
  • 동의 받은 정보
• 동의 불요 정보와 동의 받은 정보의 집중 관리
  •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
• 집중관리
  •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그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 간,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정보회사 간, 신용정보집중기관 간에는 신용정보 집중 관리됨.
• 일단 동의 받은 정보는 개인신용정보주체가 철회, 삭제할 수 없음.

신용정보집중기관 수집정보 조정

개인신용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 강화

- 반드시 필요한 경우 필수정보만 제공
  - 지금까지 사실상 포괄적 동의를 받음
  -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 동의를 해야만 하는 정보를 선정하여 그 외의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해야 함
-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 반드시 조회가 필요한 영역, 조회가 필요한 때만 조회 허용
  - 조회한 정보의 조회 목적에 사용 후 폐기
- 동의 철회 및 삭제 청구권 보장
  - 지금까지 동의 철회 못하게 한 것을 동의 철회 가능하게 개선
- 지나친 정보 수집에 대한 규제 필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의 문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활용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기관으로, 전국은행연합회
- 외국의 경우 중앙은행이 Public Credit Registry 역할을 함
- 우리의 경우 은행들의 협의체인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담당
- 신용공여자의 입장에 치우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음

제도 운영의 개선 검토

-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은행이나 금융당국에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의 문제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집중기관 지정시 혜택	현 제도의 문제점

• 금융기관 중 같은 종류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거나 금융기관 외의 같은 종류의 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등의 협약 등에 따라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기관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관(신용정보법 제28조).
• 현재 여신전문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금융투자협회
	•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지정된 사업자들은 협회에 개인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집중시켜 관리할 수 있음.
	• 미납정보, 미수정보 등을 집중관리. 서비스 공급 제한 등으로 효율적 채권 관리.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활용 위해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집중기관을 인정할 업종의 적실성
		  • 해당 사업자의 협회가 고객의 연체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집중 관리하는 경우 블랙리스트로 기능하게 됨.
		  • 예컨대, 정보통신업의 경우 적실성이 있는 것인지 검토 필요
		• 사업자들이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과도한 정보 수집, 과도한 정보 축적, 사업자들의 부당한 마케팅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의 적절성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
• 방송통신신용정보 공동관리 사업 • 요금 연체시 가입 거절(통신서비스 시장 규모 : 2012년 55조1,226억원, 통신과금서비스 2012년 3조)

방송통신서비스 사업자간 요금연체정보 공유를 통해 올바른 방송통신 이용문화 정립에 기여합니다.

방송통신서비스 관련 연체정보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신규서비스 가입등에 제한을 받게 됨. 신용정보회사에 연체정보는 제공되지 아니하며, 개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적절성

방송통신 사업자에게 미납정보 공유 허용

- 블랙리스트 제도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신용정보 집중기관 지정은 특혜의 소지
- 통신요금에 스마트폰 할부대금, 부가서비스 이용요금도 포함됨. CP로부터 추심수수료도 받음.

참여업체

보험개발원의 정보를 자동차 보험 텔레마케팅용으로 활용하던 사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2. 10. ~ 12.)

- 개인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보험 가입정보가 보험사에 의한 텔레마케팅에 활용되고 있었음.
- 손해보험협회 의견 청취, 보험개발원 자료요청, 방문 조사 등동의 없는 텔레마케팅 금지, 보험개발원의 정보 조회 시 동의 여부 확인, 조회 내력 정보 관리 등 개선안 마련.
- 금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하기로 함 (2012. 12.).

금융위원회 제도 개선(2012. 12.)

- 보험 정보의 텔레마케팅 활용 동의 요건 강화
-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한 자동차보험 정보는 **일정기한* 내에 파기**
- **"정보제공기록 조회시스템" 구축**
- **보험개발원내 "보험정보민원센터" 설치**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의 신용정보 오남용 사례(2013. 적발)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2009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보험사가 전화영업(TM)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휴업체 회원의 보험계약과 사고관련 정보(2422만건)에 대한 조회 요청사항을 승인하면서 해당 제휴업체가 고객에게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음. •이에 따라 423만건의 보험계약 정보가 고객의 동의 없이 보험사에게 넘어감. •보험정보망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관리하지 않고 보험사가 관리하게 방치함으로써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가 고객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함. •2009년 4월부터 2012년 12월 중 366만건의 정보 조회는 사고조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소지가 있음에도 사전·사후 점검이 이뤄지지 않음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에 기관 주의 조치. 관련 임직원 6명에게 주의 및 주의 상당의 제재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개인정보 외에도 고객의 진단정보 66종 등 총 125종의 보험 정보를 관리·활용해 옴.	•2010년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고객의 위험등급, 직업·직종, 모집자 정보 등 총 10종의 보험계약정보를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활용. •교통사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35종의 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지만 2008년 4월부터 허가된 정보 외의 26종의 정보를 관리해 옴. •기관주의와 시정명령 •관련 임직원 2명은 주의의 제재조치

개별신용정보 집중기관 제도개선

개별신용정보 집중기관 개선

-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범위를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됨. 같은 종류의 금융기관 또는 같은 종류의 사업자 간의 협약 등으로 집중관리·활용 대상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됨.
- 협약의 내용 공개해야 함
  - 현재는 협약 공개하지 않음
-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인정될 기관은 신용도 판단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만 인정해야 함.
-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공공성 강화 필요

신용조회 등 신용정보 활용과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상거래거절근거 신용정보 고지의무 개선

상거래거절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의무	제도의 개선

• **현행 신용정보법 제36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본인 정보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한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그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음.
	•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불이익 방지.
	• '일체의 불이익한 처우'로 확대 필요
	  • 상거래거절, 중지의 경우에만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도 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adverse action : 불이익
	• '언제나 고지'하도록 할 필요
	  •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고지하도록 하는데, 고지하지 않으면 정보주체는 알 수 없음. 그러므로 언제나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개인신용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의 도입 필요

정통망법의 경우	신용정보법의 경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3자 제공 및 개인정보 취급위탁 포함)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은 자 및 그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조회 가능하게 되어 있음. •통보에 따르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언제나 통보하도록 의무화할 필요. 비용부담이 없도록 할 필요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제도의 신설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제도의 신설

명의도용 경보제도(fraud alerts)

- 미국의 제도. 15 U.S. CODE § 1681C–1 - IDENTITY THEFT PREVENTION; FRAUD ALERTS AND ACTIVE DUTY ALERTS
- 명의도용의 의심이 있는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주체가 신용조회사에 '명의도용 경보'를 보낼 수 있음.
- 신용공여를 받지 않겠다는 통지
- 이 경우 신용조회사는 다른 신용조회사들에게도 경보를 전달하고, 신용공여자로부터 요청받는 신용조회시 본인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신용공여자에게도 좀 더 높은 주의의무가 부과됨(red flag).
- ***SECURITY ALERT: Initial Fraud Alert:*** *Action may be required under FCRA before opening or modifying an account. Contact at (XXX) XXX-XXX OR (YYY) YYY-YYYY.*
- 우리의 경우 신용조회 회사 뿐 아니라 신용정보집중기관도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수도 있음.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제도의 신설

신용조회 정지제도(Credit freeze)

- 미국 각 주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임.
  -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초 도입 후 현재 48개주
- 명의도용의 위험이 있는 경우 신용조회사에 신용조회 요청에 대한 정지를 요구하는 제도.
  - 새로운 계좌의 개설을 위해 신용조회가 요청되는 경우 신용조회 정지로 계좌 개설 막을 수 있음.
  - 새로운 신용의 신청시에도 신용조회를 막음으로 명의도용 방지
- 신용조회 정지와 정지해제시 비용(미국의 경우 각 10$ 정도)
  - 명의도용 피해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용 면제

금융지주회사의 정보공유 제한

금융지주회사의 개인신용정보 등의 공유 제도 개선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선 권고(2014. 1. 13.)	내부 위험 관리, 고객 평가 목적
•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개인신용정보, 증권총액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 등의 범위에도 제한이 없으며, 활용의 범위도 제한이 없음. • 민감한 정보의 외부 유출의 가능성도 막기 어려움.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임.	• 2013. 부터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청취 • 금융지주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 주체의 동의도 없이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개인신용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이므로 제도 개선할 것 권고.	• 내부 위험 관리, 고객 평가 목적 등을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 등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 • 이 경우도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아 놓는 것이 원칙이며, 동의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임.

신용정보를 이용한 마케팅의 제한

신용정보의 마케팅 활용 제한

신용정보를 활용한 과도한 마케팅	동의를 얻어서 하는 신용정보의 마케팅 활용에 대해서도 특별한 규율 필요
• 현재의 마케팅은 민감한 정보를 과도하게 활용함 • 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막을 수 없다면 마케팅 방법의 제한이 필요함. • 일반적인 TM이나, 모집인을 허용하더라도 민감한 신용정보, 계약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금지할 필요가 있음.	• 동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정보의 마케팅 활용 동의를 받더라도 진정한 동의로 보기 어려움. • 신용조회사 신용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도록 동의를 받는 것도 문제가 있음. • 현재, Do not Call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마케팅 활용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제도 도입 필요(예, 별도의 동의. 서면 동의. 범위 제한 등). • 마케팅의 방법에 대해서도 규율이 필요함.

결론

결론

신용정보법 전면 개정

- 총칙
  - 법률의 명칭, 목적
  - 개인신용정보 보호의 원칙
  - 동의의 원칙과 예외
- 신용정보집중기관
  - 집중기관의 범위, 집중의 주체
  - 집중정보의 범위
  - 집중정보의 활용과 제한
  - 접근권, 통지의 의무, 정정 요구 등 개인신용정보 주체의 권리
-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
  - 신용조사의 허용범위
  - 당사자 통지, 당사자 접근권, 정정 요구 등

참고 : ACCIS 2012 조사

Annex 10: Consumer Identity Verification Data, by credit bureau

Consumer/borrower identity data	AT KSV	BE NBB	CH CRIF	CY Artemis	CZ CCB	DE Schufa	DE Boniversum	DE ICD	DK Experian	ES Experian	EL Tiresias	HR HROK	HU BISZ	IT Experian	IT CRIF	NL Experian	NL BKR	NO Experian	PL KRD	PL BIK	RS Serbia	RO BDC	SE UC AB	SK SCB	SL Sisbon	UK Callcredit	UK Equifax	UK Experian
Nam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ther or previous nam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xpayer or other unique identification numbe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ate of birth	■	■	■	□	■	■	■	■	■	□	■	■	■	■	■	□	■	□	■	■	■	■	■	■	■	■	■	■
Gender (or Titl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ddress(e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Financial Associate - Spouse or partne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arital statu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thers (please describ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Financial Associate - Person with whom have a joint borrowing arrangement																										■	■	■
Bank account, document ID numbers														■														
Phone number(s)			■									■		■														
Fathers name/Husband's name											■																	
	Yes							No																				

N.B. It is recognised that this may be subject to update by responder firms to ensure consistency of interpretation of the question

참고 : ACCIS 2012 조사

Annex 12 : Data collected on the credit provided and the repayment performance of that debt

What kind of data do you collect Yes / No	AT KSV	BE NBB	CH CRIF	CY Artemis	CZ CCB	DE Schufa	DE Boniversum	DE ICD	DK Experian	ES Experian	EL Tiresias	HR HROK	HU BISZ	IT Experian	IT CRIF	NL Experian	NL BKR	NO Experian	PL KRD	PL BIK	RS Serbia	RO BDC	SE UC AB	SK SCB	SL Sisbon	UK Callcredit	UK Equifax	UK Experian
Incom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ssets e.g. shares, property, saving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imi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riginal amount of credi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utstanding amoun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nterest rate or information that rate is preferentia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ayment terms or periodicity of repaymen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uration of loan e.g. start & end dat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n-time payment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resence on rejected cheque list or status code to show cheque or payment returne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issed payment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o you hold information on the number of days loan is past due in addition to a missed paymen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o you show data on accounts that are settled - Fully pai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artially paid and no further funds expecte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Written off/defaul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o you hold data on special payment terms for accounts in difficult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ankruptcy/insolvency dat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ourt judgement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otes CZ – Interest rate can be partially calculated from instalment data					■																							
Special payment terms for some accounts from our debt collection partners								■																				
Special payment terms : Suspension of payment for SMEs Suspension of mortgage instalments for family Suspension of payment for people living in the earthquakes- affected areas															■													
Yes, indication for the start of re-financing plan																							■					
Voluntary terminations on car loans, deceased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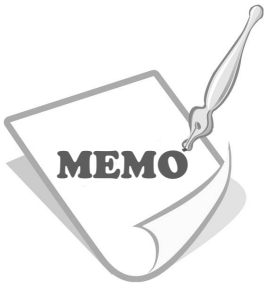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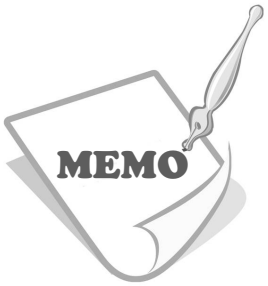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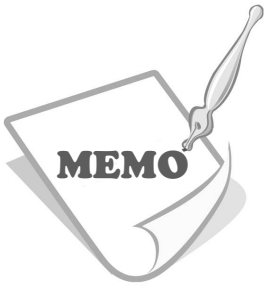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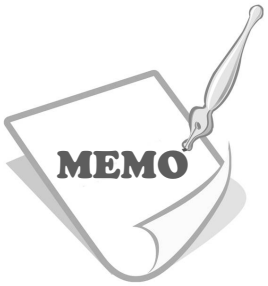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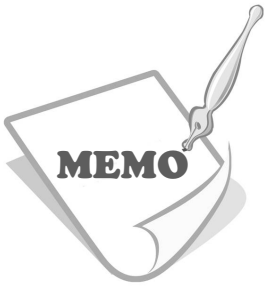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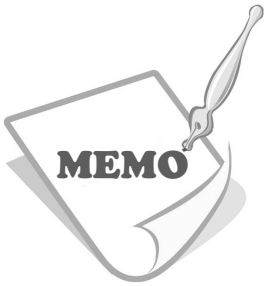
MEMO

발 제 Ⅱ

금융계의 정보 집중과 소비자 피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한 실효적인 손해배상을 위하여

장 진 영 변호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법무법인 강호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한 실효적인 손해배상을 위하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법무법인 강호 변호사 **장 진 영**

1. 최근 개인정보유출사건 소송의 경과 및 법원 판단

가. 엔씨소프트 리니지게임 아이디, 비밀번호 유출 사건

2004년 엔씨소프트가 리니지2 업데이트를 하면서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로그파일을 암호화 하지 않아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5일간 아이디, 비밀번호가 노출됨.

대법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유출만으로 헌법상 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인정함. 손해배상금은 위자료로 10만원 인정함(1심 법원은 70만원)

나. 국민은행 고객정보유출사건

국민은행의 직원이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고객 32,277명의 성명, 주민번호, 이메일 등을 첨부하여 보내는 실수를 저지른 사건. 사고발생 후 이메일 회수, 고객에게 삭제요청, 정보도용차단서비스 무료제공 등의 조치를 이행함.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07. 11. 27. 선고 2007나33059 판결)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정보 노출된 고객에게는 각 20만원(1심은 10만원), 성명, 이메일 주소만 노출된 고객에게는 1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2심은 7만원).

다. LG전자 입사지원사이트 정보유출사건

2006년도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에서 불합격한 지원자가 2006. 9. 26. 22,000명의 입사지원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기본인적사항, 학력, 대학, 대학원의 학점, 어학성적, 자기소개서, 연봉, 연구실적 등의 정보가 있는 링크파일을 포털사이트 다음에 게시하여 3,000여명의 입사지원서가 열람당한 사건.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08. 11. 25. 선고 2008나25888 판결) 원고들은 이로 인하여 자신들이

입사지원을 위하여 등록한 정보가 열람당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할 수 있음. 위자료는 개인정보유출이 가져올 수 있는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 정보의 성격을 고려하여 30만원으로 정함(1심 70만원).

라. 옥션 개인정보유출사건

2008년1월경 옥션 사이트가 해킹돼 회원 약 1천만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총 14만6천여명이 총 30여건의 손해배상소송을 냈음.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는 옥션 회원 14만6,601명이 (주)이베이옥션과 인포섹(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31411 등 13건)에서 "옥션이 취한 보안조치 내용을 볼 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함.

재판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킹으로 도난당했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킹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취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해킹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고 밝히고, "해킹 사고 당시 옥션이 취하고 있던 각종 보안조치의 내용, 해킹방지기술의 발전상황 및 해킹의 수법 등 여러사정에 비춰보면, 옥션 등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위반된 사실도 없다"고 판단함.

마. SK브로드밴드 정보유출사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08년 SK브로드밴드가 2006~2007년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한 고객 600만명의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업체 등 협력업체에 무단으로 유출했다며 전·현직 임직원 20여명을 불구속 입건함. 이에 SK브로드밴드 가입자 3749명은 "정보가 유출돼 원치 않는 스팸전화와 문자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음.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SK브로드밴드는 정보유출 피해자 3370명에게 1인당 10만원 또는 20만원씩 총 6억627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음(2008가합63227 등).

재판부는 우선 정보 수집 동의 자료가 전혀 없는 원고들과 관련해서는 "원고들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얻었다는 점은 피고가 입증해야 하는데도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를 취급 위탁 형태로 외부에 제공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힘.

재판부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유효한 동의를 했지만 새로운 수탁자에게 취급 위탁을 하면서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다만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은 원고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달리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또는 동의를 받기 전에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한 원고들은 20만원씩, 동의를 받았지만 그 후 새로운 수탁자에게 취급 위탁을 하면서도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고들은 10만원씩 인정함.

바. GS칼텍스 개인정보유출사건

GS칼텍스의 고객정보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GS넥스테이션의 직원이 GS칼텍스 보너스카드의 고객정보를 빼내어 집단소송을 의뢰받을 변호사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1,100만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정보유출사실과 자료를 언론사에 제보했다가 체포되어 CD, DVD가 압수됨.

개인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들이 모두 회수되거나 폐기되었고 그 밖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흔적도 보이지 아니하여 제3자가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이용할 수는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 없다고 판결(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판결).

2. 대법원의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요건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판결 등)

-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취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이 무엇인지,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 또는 제3자의 열람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제3자의 열람 가능성이 있었거나 앞으로 열람 가능성이 있는지

▸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확산되었는지, 개인정보 유출로 추가적인 법익침해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3. 왜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끊이지 않는가?

2004년도 엔씨소프트의 리지니2 개인정보유출사건 이후 크고 작은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다가 결국 최근 카드3사의 정보유출사고는 1억건 이상의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인구 5천만에 불과한 나라에서 총인구의 2배가 넘는 정보유출사고라니...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개인정보유출사고가 줄이어 터져도 기업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나 시스템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 정부의 규제에 의해 주민등록수집을 금지하기 전까지 기업들은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었다.

왜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되풀이되는 것인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자신의 관리능력 이상으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왜 기업들이 그렇게 개인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개인정보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 드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원인을 진단했다면 대책도 명료하게 세울 수 있다.

대체 정보유출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하거나 불가피하게 수집한 정보를 철통같이 보안하도록 하면 된다. 지난 10년간 각종 정보유출사고 때마다 정부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 시행했지만, 사고가 끊이지 않은 이유는 정부가 근본대책은 놔두고 지엽적인 대책만 내놓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대책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면 기업이 문을 닫게 하도록 제도를 바꾸면 된다. 기업은 그 생리상 스스로 망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망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 정부가 감독을 안 해도 기업들은 폭탄과도 같은 개인정보에 욕심을 내지 않게 될 것이다. 정보수집도 최소한의 수준에 그칠 것이고, 이미 수집된 필요 이상의 정보는 즉각 폐기할 것이다. 다만 꼭 유지해야 하는 정보는 신줏단지 모시듯 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기업에게 망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을 수 있을까.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해서 정부가 사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장기간 영업정지를 시키기는 것은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어려울 것이다. 피해자들이 쉽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된다.

4. 개인정보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

가. 집단소송제 도입

다수의 피해자 중에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원고들로부터 명시적 위임을 받지 않고서 대표의 자격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으면 별도의 제외신고(opt-out)를 하지 않은 피해자는 소송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판결의 효력을 받게 하는 소송제도이다. 생활양식의 현대화에 따라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보편화되고, 피해가 대량의 피해자, 소액의 피해액의 형태로 나타나자 소액다수의 피해자를 일괄적으로 구제하는 제도로 현재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도입되어 있다.

2005년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모두 6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이 고작이어서 연 1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나마 원고승소 사건은 화해로 종결된 1건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 1991년 이후 매년 평균 200건 이상의 집단소송이 제기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이는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소송남용에 대한 우려로 지나치게 요건을 엄격하게 하여 남소가 문제가 아니라 사문화를 걱정해야 하는 결과가 되었다.

나. 단체소송제 도입

2008년 시행된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금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소송으로서 소비자단체에게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가 될 수 있는 소비자단체의 요건도 엄격하고 법원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소송제기허가의 요건은 더욱 엄격하여 2008년 시행 이후 겨우 1건의 제소실적이 있으며 판결선고가 난 사건은 1건도 없다.

2012년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소비자단체의 단체소송을 도입하였다.

미국식 집단소송제도가 재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독일식 단체소송로 타협한 결과 도입된 것으로 피해자가 직접 권리구제에 나설 수 없다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는데다가 그나마도 지나치

게 엄격한 진입장벽을 두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

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제도란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배상제도와는 달리, 과거에 가해자가 행한 행위를 처벌하고 향후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다시 행하여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법원이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로 미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에는 2011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처음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탈취 ·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2013년 박근혜정부 초기의 경제민주화 기조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 행위에 기술 유용 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부당한 발주 취소, 부당한 반품 행위,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단가 인하에 대해서도 실제 손해의 3배의 범위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했다.

라. 입증책임의 전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 현행법으로는 기업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보안에 관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고도로 기술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2008년 발생한 옥션 정보유출사건에서 피해자들이 패소했는데, 법원은 당시 옥션의 기술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① 원고모집과 소제기, ② 소송에서의 주장과 입증, ③ 승소판결 및 집행의 단계를 모두 성공적으로 진행해야만 가능하다. 위 단계 중 가장 중요한 핵심단계는 주장과 입증단계이다.

집단소송제도는 원고를 모집하는 어려움 해소, 판결의 효력 극대화 측면, 즉 소제기와 판결효과에 대한 대안이 될 수는 있으나 주장과 입증에 대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아무리 강력한 판결효력을 부여하더라도 승소판결을 받기가 어렵다면 집단소송제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것이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천문학 적인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더라도 이는 그 전제로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어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자체만

으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지만 인터넷과 언론의 영향으로 인해 정보유출사고 때마다 많게는 수만명이 원고로 참여하는 대규모 공동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더라도 예컨대 100,000명이 원고로 참가한 소송에서 천문학적인 배상금과는 거리가 먼 1인당 10만원의 손해배상액만 인정되더라도 100억원이라는 큰 액수의 배상금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입증책임의 전환이다. 일단 정보가 유출되면 기업이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입증책임의 전환은 환경소송, 의료소송에서 법원의 판례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이미 상당한 판례와 연구실적이 축적되어 있고, 제조물책임법 등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논란이 많은 제도에 비해 큰 무리없이 도입할 수 있으면서도 효과는 매우 크다는 장점이 있다.

마. 법정손해배상 제도

설령 기업의 책임으로 정보가 유출되었더라도 피해자에게 손해가 있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카드를 제삼자가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는 것처럼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고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간접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라는 것을 입증하기도 어렵다. 피해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정도로 위자료를 인정받기는 어렵다. 2010년 발생한 GS칼텍스 정보유출사건 소송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불안감만으로는 위자료를 지급할 정도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했다.

자신의 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터지면 정보유출피해자들은 정보의 오, 남용에 대한 걱정으로 정신적 피해가 생긴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를 입증해 보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정보유출사고가 터지면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그 손해배상금을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원고 측이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률에 규정된 손해배상액의 규정에 근거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결론

계속 반복되는 개인정보유출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으로 하여금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게 해야 하고, 그 지름길은 실효적인 손해배상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집단소송제, 단체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매우 의미있는 제도임에는 틀림없지만 지금까지 도입된 전례에 비추어보면 설령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시작은 창대할지 몰라도 입법과정에서 누더기가 되어 결국은 사실상 사문화의 길로 가는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럴 바에는 입증책임의 전환, 법정손해배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실효적인 손해배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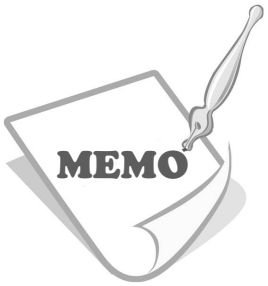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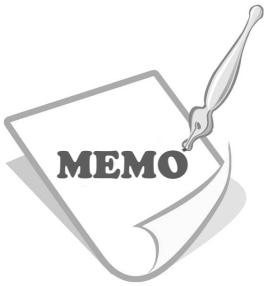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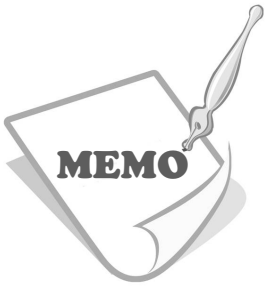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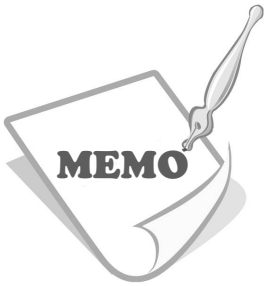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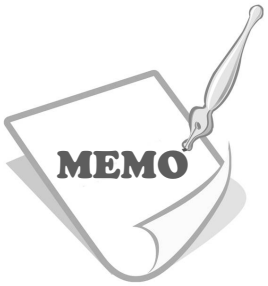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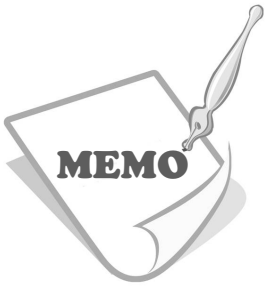
MEMO